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7. 16.

도시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
- 발의자: 남현주 의원 등 10명(이선주, 도하석, 손범구, 황국주, 고명욱, 강한곤, 김기열, 박정환, 권숙자)
- 발의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7. 16.)

## 2. 제안이유

-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대해 명시함(안 제1조에서 제2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에서 안 제6조)
- 사업자와 협약체결, 사업의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에서 안 제8조)
- 보조금 반환에 대해 명시함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 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9조
 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7. 4.~7. 14.): 의견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 -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신청, 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일반세대를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에서 35세대 미만의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지원 금지 조항도 추가됨.
    - ※ 대구광역시 내 중구, 서구, 남구, 수성구, 달성군, 군위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
  - 안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